

관광지·관광단지의 구분기준(제54조제2항 관련)

1. 관광단지 :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,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며, 바목의 면적기준을 갖춘 지역

시설구분	시설종류	구비기준
가. 공공편의 시설	화장실·주차장·전기시설·통신시설·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	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
나. 숙박시설	관광호텔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	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
다. 운동·오락시설	골프장·스키장·요트장·조정장·카누장·빙상장·자동차경주장·승마장·종합체육시설·경마장·경륜장 또는 경정장	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, 「한국마사회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시설·설비기준 또는 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시설·설비기준에 부합할 것
라. 휴양·문화시설	민속촌·해수욕장·수렵장·동물원·식물원·수족관·온천장·동굴자원·수영장·농어촌휴양시설·산림휴양시설·박물관·미술관·활공장·자동차야영장·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업	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
마. 접객시설	관광공연장업·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·관광유희음식점·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·관광식당업 등	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
바. 총면적		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

비고) 바목의 총면적은 시·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·개발계획·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2. 관광지 : 그 지역 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면적이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, 나목 내지 바목의 요건은 갖추지 아니한 지역